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2월 23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23.(목) 12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2. 22.(수)	담당부서	산업부 기술안보과 중기부 기술보호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방사청 기술보호과
담당과장	김창희 과장 (044-203-4850) 노진상 과장 (044-204-7780) 남영택 과장 (042-481-5213) 길계호 과장 (02-2079-6970)	담 당 자	이도안 사무관 (044-203-4854) 김혜규 사무관 (044-204-7784) 정수환 서기관 (042-481-5179) 김원태 사무관 (02-2079-6985)

〈 핵심기술 보호와 인력 선순환을 통해 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우리기술 및 핵심인력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

※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 공동발표

❶ 국가핵심기술 지정확대 및 기술일몰제 시행

❷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전문인력 DB구축

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M&A 심사범위 확대

□ 정부는 12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M&A, 인력탈취,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하여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❶]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하여,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 지정중

○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하여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③ 또한,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예)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 → + 30%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소유

④ **국가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보안은 필수**입니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 (사전) 보안과제 지정확대, 보안컨설팅지원 → (선정) 보안우수기관 가점부여 → (실행)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보안전문가 지원 → (종료) 핵심기술 판정권고, 기관평가 반영

[전략❷]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①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 및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 향후 **법제화하여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재직시 보상금 지급(협력업체 핵심인력에 한해 정부 일부매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확대, 정부 퇴직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인력 퇴직 후 국내 재취업 지원

[전략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하여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계정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재도약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등

②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의 노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47.6억원) 신설('22년)

[전략❹] 사이버 기술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①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②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③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하겠습니다.

[전략⑥] 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 부처간 침해신고센터 연계→중점지원 분야별 법률서비스 지원, 특허DB활용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영업비밀 해외유출 입증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② 미국·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은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 첨】 1. 글로벌 기술패권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2. (산업부)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2~'24)
3. (중기부)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2~'24)
4. (특허청)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22~'26)
5. (방사청)제2차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2~'2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이도안 사무관(☎ 044-203-48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